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

산림전문가	배치시설	배치기준
숲해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명 이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숲	1명 이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2명 이상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 (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	1명 이상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유아숲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	별표 3 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운영인력의 배치기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숲지도사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명 이상
숲길등산지 도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1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2명 이상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